

효율성지표 활용을 위한 비용 산정 방안

김 창 민

- 성과관리센터의 Brownbag Seminar는 센터 내 연구진 간의 의견공유를 위한 장으로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고 진행 중인 연구이므로,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효율성지표 도입 현황 및 문제점

-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효율성지표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은 '200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'부터 임
 - 2009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, 효율성지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사업부문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 1개 이상의 효율성지표를 제시토록 함
 - 또한, 효율성지표를 제시할 경우 '09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향후 효율성지표 제시 의무화 및 효율성 지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임을 명시
- 효율성지표 도입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효율성지표의 활용은 미흡한 실정임
 - 효율성지표 활용을 위해서는 산출/결과 달성에 소요된 비용을 측정해야 하나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해당 사업의 예산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이러한 간접비를 측정하기 어려움
 - 또한, 간접비를 제외하더라도 '고정비용'이나 '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자산취득비' 계상 등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산정 기준이 없어 개발된 효율성지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
- *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효율성지표의 대부분은 '결산 대비 산출량'으로 측정하고 있어 고정비용이나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비용 산정으로 보기 어려움

(간접비 사례) 식약청의 장비현대화 사업

- 본 사업의 예산은 신중유해물질 검사 등을 위한 장비구입 및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임
- 본 사업의 효율성지표로 ‘신중유해물질검사비용 대비 검사실적’을 설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중유해물질검사비용에는 장비구입 및 교체비용 외에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포함되어야 함
- 그러나 프로그램예산을 살펴 보면, 검사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관세행정지원 프로그램내의 본청인건비 단위사업과 본청기본경비 단위사업에 편성되어 있음
- 따라서, 본 사업예산으로만 비용을 산정하게 되면 간접비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
- 이러한 경우, 간접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청에서 검사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별도로 산정해야 함

□ 비용 산정 방안

- 효율성지표 활용을 위해서는 산출/결과에 대한 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나, 이러한 원가측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
- 따라서, 효율성지표 활용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부분을 완화한 공통된 기준이 필요
 - 이는 정확한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, 매년 반복되어 수행되는 사업에 대해 공통된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여 효율성이 제고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선의 방안임

- 이를 위해,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세출과목(비목)¹⁾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
 -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출내역의 성질에 따라 비목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각 비목을 고정비용 또는 가변비용으로 구분하고 가변비용에 해당하는 비목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계상
 - * 산출량의 변화에 따라 비용이 변하는 경우는 가변비용으로, 산출량의 변화와 무관하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고정비용으로 간주
- 실제로 사업에 적용하는 경우,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²⁾
 - 첫째, 동일 비목내에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비용 산정시 이를 감안해야 함
 - 예) 공공요금 및 제세(210-02), 시설장비유지비(210-09), 시설비(420-03) 등
 - 둘째, 민간이전, 자치단체이전, 해외이전, 출연금, 용자금의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의 지출내역에서 고정비용을 다시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

□ 간접비 처리

- 원가측정에 있어 간접비 측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,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의는 원가측정이 아닌 효율성지표 도입을 위한 차선의 비용 산정 방안임
- 효율성지표 도입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고 이를 성과평가에 활용³⁾하는 것임

1) 예산을 각 경비의 성질에 따라 구분한 것

2)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 볼 '비목별 비용 구분'에서 다시 언급하겠음

3)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'예산절감 및 집행효율성 제고' 여부를 묻는 평가항목의 경우, 효율성지표를 제시 하도록 하여 통제 가능한 비용의 관리노력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있음

-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효율성지표 도입을 위한 비용 산정 기준으로 고정비용(통제할 수 없는 비용)과 가변비용(통제 가능한 비용)으로 구분
-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책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'원가중심점 (cost center)' 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따라 비용을 산정
 - 원가중심점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나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조직단위를 의미하며,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원가중심점으로 설정해야 함
- '원가중심점' 개념을 도입하면, 간접비 중에서 해당 비용에 대한 통제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'통제할 수 없는 비용'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 산정시 제외 가능
 - 앞에서 살펴 본 간접비 사례(식약청 장비현대화사업)에서 신종유해물질 검사인력 규모 및 인건비 수준은 해당 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⁴⁾
 - 만약, 담당부서에서 임시직 등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는 통제 가능한 비용이므로 이를 비용 산정시 반영해야 함

4)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진 공무원 인건비와는 달리 검사인력은 통제가 전혀 안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임시직 등의 고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측면에서 통제할 수 없는 비용으로 간주

< 참고 > 세출과목 구분

목번호	목	내역
100	1. 인 건 비	
110	인 건 비	01. 보 수 02. 기타직보수 03. 일용임금
200	2. 물 건 비	
210	운 영 비	01. 일반수용비 02. 공공요금 및 제세 03. 피복비 04. 급량비 05. 특근매식비 06. 일숙직비 07. 임차료 08 연료비 09. 시설장비유지비 10. 차량-선박비 11. 재료비 12. 복리후생비 13. 시험연구비 14. 학교운영비 15. 위탁사업비 16. 기타 운영비
220	여 비	01. 국내여비 02. 국외업무여비 03. 국제화여비
240	업 무 추 진 비	01. 사업추진비 02. 관서업무비
250	직 무 수 행 경 비	01. 직급보조비 02. 월정직책급 03. 특정업무경비 04. 교수보직경비
260	연 구 개 발 비	
300	3. 이 전 지 출	
310	보 전 금	01. 보상금 02. 배상금 03. 포상금 등
320	민 간 이 전	01. 민간경상보조 02. 민간위탁금 03. 연금지급금 04. 보험금 05. 이차보전금 06. 구료비 07. 민간자본보조 08. 민간대행사업비

목번호	목	내역
330	자 치 단 체 이 전	01. 자치단체 경상보조
		03. 자치단체 자본보조
		04. 자치단체 대행사업비
340	해 외 이 전	01. 해외경상이전
		02. 국제부담금
		03. 해외자본이전
350	출 연 금	01. 출연금
		02. 금융성기금 출연금
		03. 민간기금 출연금
400	4. 자 산 취 득	
410	토 지 매 입 비	
420	건 설 비	01. 기본조사설계비
		02. 실시설계비
		03. 시설비
		04. 감리비
		05. 시설부대비
		06. 건설가계정
430	유 형 자 산	01. 자산취득비
		02. 저장품매입비
		03. 차관물자용역대
440	무 형 자 산	
450	용 자 금	02. 통화금융기관 용자금
		03. 비통화금융기관 용자금
		04. 기타 민간용자금
		05. 지방자치단체 용자금
460	출 자 금	01. 일반출자금
		02. 통화금융기관 출자금

*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(기획재정부, 2009. 4)

* 자율평가 대상이 아닌 특수활동비⁵⁾(230), 자치단체교부금(330-02), 비금융공기업용자금⁶⁾(450-01),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(470), 예탁금(480), 상환지출(500), 전출금(600), 예비비 및 기타(700) 목은 제외

5) 특수활동비 자체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,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비공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시킴

6) 용자금 중 비금융공기업 용자금(450-01)은 부문간거래로 자율평가대상에서 제외

□ 비목별 비용 구분

○ 인건비(110)

- 인건비 중 보수(110-01)는 인건비 단위사업으로만 편성되며, 사업담당 부서에서 통제할 수 없는 비용(고정비용)에 해당되므로 제외
- 세부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기타직보수(110-02) 또는 일용임금(110-03)이며, 이는 가변비용임

목번호	목	내역	비용 구분
110	인 건 비	01. 보 수	고정비용
		02. 기타직보수	가변비용
		03. 일용임금	가변비용

○ 운영비(210)

- 운영비의 경우, 내역에 따라 고정비용 또는 가변비용으로 구분 가능
- 기본적으로 가변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고정비용에 해당함
 - 공공요금 및 체세(210-02)의 경우 공공요금⁷⁾은 가변비용이나 세금은 고정비용에 해당
 - 일·숙직비(210-06), 임차료(210-07)는 고정비용에 해당
 - 특근매식비(210-05) 및 복리후생비(210-12)의 경우에는 지급수준 자체는 정해져 있으나, 통제 가능한 인력규모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므로 가변비용으로 처리
 - 시설장비유지비(210-09)의 경우,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모두 포함됨
 - 시설물의 유지보수비는 고정비용이나 증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⁸⁾는 가변비용에 해당

7) 간혹, 시설사용료를 공공요금으로 계상한 경우가 있는데 시설사용료는 임차료에 해당하므로 비용 산정 시 고정비용으로 처리해야 함

목번호	목	내역	비용 구분
210	운 영 비	01. 일반수용비	가변비용
		02. 공공요금 및 제세	공공요금 : 가변비용 제 세 : 고정비용
		03. 피복비	가변비용
		04. 급량비	가변비용
		05. 특근매식비	가변비용
		06. 일·숙직비	고정비용
		07. 임차료	고정비용
		08. 연료비	가변비용
		09. 시설장비유지비	고정비용/가변비용
		10. 차량·선박비	가변비용
		11. 재료비	가변비용
		12. 복리후생비	고정비용
		13. 시험연구비	가변비용
		14. 학교운영비	가변비용
		15. 위탁사업비	가변비용
		16. 기타 운영비	가변비용

○ 여비(220), 업무추진비(240)

- 산출량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통제 가능한 비용이므로 가변비용에 해당

목번호	목	내역	비용 구분
220	여 비	01. 국내여비	가변비용
		02. 국외업무여비	
		03. 국제화여비	
240	업 무 추 진 비	01. 사업추진비	가변비용
		02. 관서업무비	

8) 현행 세출과목 구분에 따르면 장비가동에 소요되는 연료비(유류비)의 경우, 연료비(210-08), 시설장비 유지비(210-09), 차량·선박비(210-10)에 모두 포함(냉·난방시설에 대한 연료비는 연료비에, 중장비 및 항공기에 대한 유류비는 시설장비유지비에, 차량 및 선박 유류비는 차량·선박비에 각각 포함)

○ 직무수행경비(250)

- 산출량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고정비용으로 구분
- 단, 특정업무경비의 경우는 산출량에 따라 비용이 변하므로 가변비용으로 구분

예) 농림수산식품부 '농산물원산지관리'사업의 원산지위반 수사활동을 위한 직무수행경비

목번호	목	내역	비용 구분
250	직무수행경비	01. 직급보조비	고정비용
		02. 월정직책급	고정비용
		03. 특정업무경비	가변비용
		04. 교수보직경비	고정비용

○ 연구개발비(260)

- 조사, 연구 등을 위한 용역비에 해당하므로 가변비용으로 구분

목번호	목	내역	비용 구분
260	연구개발비	-	가변비용

○ 보전금(310)

- 산출량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통제 가능한 비용이므로 가변비용에 해당

예)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단속사업의 수산업법위반자 신고포상, 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의 (농작물 폐기 등에 따른)손실보상 등

- 단, 재해대책지원과 같은 예비비 성격의 보전금은 고정비용으로 처리

목번호	목	내역	비용 구분
310	보전금	01. 보상금	가변비용
		02. 배상금	가변비용
		03. 포상금	가변비용

- 민간이전(320), 자치단체이전(330), 해외이전(340), 출연금(350), 융자금(450), 출자금(460)
 - 상기 비목들은 원칙적으로 가변비용에 해당하나, 이를 사업에 적용할 경우 실제 지출내역에 따라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
 - 이전지출 또는 출연·출자, 융자를 통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실제 지출되는 내역별로 고정비용 또는 가변비용 여부를 구분하여 비용을 산정해야 함

목번호	목	내역	비용 구분
320	민 간 이 전	01. 민간경상보조	고정비용/가변비용
		02. 민간위탁금	고정비용/가변비용
		03. 연금지급금	가변비용
		04. 보험금	가변비용
		05. 이차보전금	가변비용
		06. 구료비	가변비용
		07. 민간자본보조	고정비용/가변비용
		08. 민간대행사업비	고정비용/가변비용
330	자 치 단 체 이 전	01. 자치단체 경상보조	고정비용/가변비용
		03. 자치단체 자본보조	
		04. 자치단체 대행사업비	
340	해 외 이 전	01. 해외경상이전	고정비용/가변비용
		02. 국제부담금	
		03. 해외자본이전	
350	출 연 금	01. 출연금	고정비용/가변비용
		02. 금융성기금 출연금	
		03. 민간기금 출연금	
450	융 자 금	02. 통화금융기관 융자금	고정비용/가변비용
		03.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	
		04. 기타 민간융자금	
		05. 지방자치단체 융자금	
460	출 자 금	01. 일반출자금	고정비용/가변비용
		02. 통화금융기관 출자금	

(예시)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어업정보서비스

□ 지출비목 : 민간경상이전(320-02)

□ '09예산 산출내역

- 농어업·농어촌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가격·유통 시스템 운영
 - 유통속보, 시황·전망정보 제공료, 뉴스 콘텐츠 및 아피스기자단 운영
-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
 - 동영상콘텐츠 제작, 방송제작 소모품, 방송제작 관련 차량 임대9)
-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육성 및 홍보
 - 농촌정보화 세미나, 동호회 지원, 온오프라인 홍보/홍보물 제작, 고객만족도 등
- 정보통신망 운영 및 시스템 Upgrade
 - 인터넷 전용회선료, H/W·S/W 유지보수료, SMS 발송, PDA 이용료
 - 시스템 개선을 위한 **장비 도입**10) 및 기타
- 농업농촌정보화 기초조사
 - 위탁조사비, 보고서 제작, 업무협약의 출장비 등
- 농어업정보서비스 운영 위탁관리비
 - 운영인력(21명), 기관 공통 운영경비 및 일반관리비
 - 사업운영(출장, 특근매식, 사무장비 유지보수 등)

* 농림수산물식품부 내부자료 재구성

○ 토지매입비(410)

- 시설물 등의 공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고정비용으로 구분

목번호	목	내역	비용 구분
410	토 지 매 입 비	-	고정비용

9) 고정비용에 해당

10) 장비도입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(430-01)에서 다시 언급할 것임

○ 건설비(420)

- 사전에 결정된 공사규모에 따라 비용이 정해지므로 고정비용에 해당

목번호	목	내역	비용 구분
420	건설비	01. 기본조사설계비	고정비용
		02. 실시설계비	고정비용
		03. 시설비	고정비용
		04. 감리비	고정비용
		05. 시설부대비	고정비용
		06. 건설가계정	고정비용

○ 유형자산(430)

- 산출량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통제 가능한 비용이므로 가변비용에 해당

- 단, 자산취득비(430-01)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함

- i)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(공고료, 수수료, 임차료 등)는 고정비용으로 처리
- ii) 취득 자산¹¹⁾의 법정내용연수를 감안하여 당해연도의 비용을 산정
(법정내용연수/자산취득액)

목번호	목	내역	비용 구분
430	유형자산	01. 자산취득비	가변비용
		02. 저장품매입비	가변비용
		03. 차관물자용역대	가변비용

○ 무형자산(440)

- 무형자산 구입시점에서 비용이 발생할 뿐, 생산량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고정비용으로 구분

예) 해외특허권에 대한 수수료 지급

목번호	목	내역	비용 구분
440	무형자산	-	고정비용

11) 자본형성적 도서구입의 경우에도 보존연한을 감안하여 비용 산정

- 보수규정 등에 의한 임금 또는 여비 증가분,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차료 증가분 등 자연 증가분에 대한 처리
 - 기준이 되는 특정년도를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년도 수준으로 맞추어 일괄적으로 조정

□ 사례 분석 : 동축산물검역검사(농림수산식품부)

○ 비목별 지출내역

- 일용임금 (신설) : ('08) 순증 297백만원
 - 인천국제공항 발판소독조 용역 소요 : 수용비에서 대체 297백만원
- 관서운영비 ('07) 4,542백만원 → ('08) 5,617백만원 : 1,075백만원 증가
 - 일반수용비 ('07) 1,142 → ('08) 873 : 감 269백만원
 - 구제역,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국경검역 홍보 : 390백만원
 - 축산물안전관리 행사참가 및 홍보비 : 159백만원
 - 축산물 위생, WTO/SPS/FTA자문 등 각종 법정위원회 소요 : 53백만원
 - 검역증명서 등 각종 법정 양식 등 기타 : 271백만원
 - 공공요금 ('07) 209 → ('08) 542 : 333백만원 증가
 - 경의선계류장신설에 따른 운영 소요 : 순증24백만원
 - 인천공항(입국장 및 탑승동) 신설 시설 사용료 : 순증329백만원
 - 지방 공항만 시설사용료 등 기타 : 17백만원
 - 피복비 ('07) 47 → ('08) 57 : 신규인력 86명분 반영
 - 특근매식비 ('07) 32 → ('08) 35
 -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업무 증가
 - 운영수당 ('07) 46 → ('08) 0 : 수용비로 이체
 - 임차료 ('07) 919 → ('08) 2,003 : 1,084백만원 증가
 - 인천공항(입국장 및 탑승동) 신설 시설 임차 : 628백만원
 - 현장근무자 관사 임대료 상승분 및 신규증가 : 142백만원
 - 지방공항만 CIQ 시설 임차료 등 기타 : 1,233백만원

- 시설장비유지비 ('07) 350 → ('08) 267
 - 검역검사 장비 증가에 따른 장비 유지비 : 158백만원
 - 검역검사 노후 시설 보수 및 소각로 등 시설유지 : 109백만원
 - 차량선박비 ('07) 62 → ('08) 85
 - 국경검역용 차량 유류대 등 6대분 순증
 - 재료비 ('07) 1,734 → ('08) 1,745 : 11백만원 증가
 - 발판소독조, 소독약, 세관(X-ray)검색용 등 검역 재료 : 1,246백만원
 - 수입증가 및 수입식품 검사강화를 위한 검사 재료 : 469백만원
 - 축산물 수거 검사 유상수거료 등 30백만원
 - 여비 ('07) 480 → ('08) 609 : 129백만원 증가
 - 국내여비 ('07) 337 → ('08) 404 : 67백만원 증가
 - 축산물수입판매업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증가 : 132백만원
 - '06년 1월 보수지침 개정에 따른 상승분 반영 등 : 7백만원
 - 동물 및 축산물 현장 검역검사 실시 소요 등 : 265백만원
 - 국외여비 ('07) 143 → ('08) 205
 - 수입 위생조건 이행 해외수출작업장 사후관리 등 : 87백만원
 - 각종 국제기구(회의) 참석 등 : 81백만원
 - 정밀검사 기술 선진화 및 신규 검사법 기술습득 : 37백만원
 - 검역시설확충 ('07) 2,250 → ('08) 1,835 : △415백만원
 - 영종도검역계류장 마사(3동) 및 축산물검역창고 증축 : 1,518백만원
 - 서울지원 정밀검사실험실 리모델링 공사 : 92백만원
 - 제주 용강계류장 말폐독시설 설치 : 78백만원
 - 부사지원 축산물검역창고 보수공사 등 : 50백만원
 - 자산취득비 ('07) 1,899 → ('08) 2,374 : 475백만원 증가
 - 동해선 CIQ(철도) 검역소독 장비 확보 : 125백만원
 - 경의선 계류장 검역장비 확보 : 62백만원
 - 원유검사 공영화(신규)에 따른 검사 장비 보강 등 2,187백만원
- 아래의 표는 세부 비목 중에서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여 단위당 검역검수를 산정한 것임

(백만원)

구 분	'06예산	'07예산	'08예산	'06예산	'07예산	'08예산
단위(백만원)당 검역건수	2.5	2.5	2.4	6.6	5.9	6.5
검역실적(건) ¹²⁾	19,252	22,606	25,958	19,252	22,606	25,958
□ 동축산물검역검사	7,651	9,184	10,891	2,905	3,821	4,012
○ 일용임금(110)		75	297		75	297
일용임금(110-03)		75	297		75	297
○ 관서운영비(210)	3,732	4,541	5,617	2,316	3,063	2,805
일반수용비(210-01)	683	1,182	873	683	1,182	873
공공요금 및 제세(210-02) ¹³⁾	191	209	542			
피복비(210-03)	15	47	57	15	47	57
특근매식비(210-05)	27	31	35	27	31	35
임차료(210-07)	934	919	2,003			
시설장비유지비(210-09)	291	350	267			
차량선박비(210-10)	42	62	85	42	62	85
재료비(210-11)	1,545	1,735	1,746	1,545	1,735	1,746
기타운영비(210-16)	4	6	9	4	6	9
○ 여비(220)	391	480	609	391	480	609
국내여비(220-01)	259	337	404	259	337	404
국외여비(220-02)	132	143	205	132	143	205
○ 업무추진비(240)	10	13	13	10	13	13
일반업무비(240-01)	10	13	13	10	13	13
○ 민간이전(320)	-	-	51	-	-	51
연금지급금(320-00)	-	-	51	-	-	51
○ 420(건설비)	802	2,250	1,835			
기본설계비(420-01)	46	6	27			
실시설계비(420-02)	73	31	40			
시설비(420-03)	674	2,185	1,744			
감리비(420-04)	6	26	16			
시설부대비(420-05)	3	2	8			
○ 자산취득비(407)	1,881	1,899	2,374	188	190	237
자산취득비(407-00) ¹⁴⁾	1,881	1,899	2,374	188	190	237
○ 무형자산(440)	-	-	95			
무형자산(440-00)	-	-	95			

*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재구성

12) 자료수집이 어려워 검사실적은 임의로 설정하였으며, 예산의 경우에도 결산금액이 아닌 예산금액('07) 및 부처요구안('08)임

13) 실제 지출내역을 보면 시설사용료로 사용된 경비이므로 고정비용으로 처리

14) 법정내용연수를 10년으로 가정한 값임

- 고정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'06, '07예산의 경우, 단위당 검역실적이 2.5건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, 고정비용 등을 감안하면 '07년도의 단위당 검역실적이 전년 대비 0.7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

* 이는 '07년도의 일반수용비(210-01)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며, 실제로 '08년도에는 전년대비 309백만원 감액한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음

□ 시사점 및 향후 과제

○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대한 비용 산정문제

- 본 논의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비용으로 간주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경우, 식약청, 관세청 등 단속 및 검사가 고유 업무인 부처에서는 실제 산출에 직접적인 비용임에도 비용 산정 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
- 실제 부처예산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비용 산정 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

○ 효율성지표 도입대상사업에 대한 범위와 관련하여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

- 토목, 건설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건설비(고정비용)이며,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해 비용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효율성지표 도입의 실익이 미흡
- 학자금대출, 장애아입양보조금지원 등 건당 지원규모가 정해진 사업의 경우에도 효율성지표 도입을 통해 비용을 절감시킬 여지가 적음¹⁵⁾

15) 이러한 사업의 경우, 실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사업추진과 관련된 경상비인데, 보통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별도 편성된 경우가 많아 위에서 언급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대한 비용 산정 문제가 발생함